

#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운영 지침

## 1. 목적

본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『협력업체의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』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- (1) "협력업체"란 당사 제정 『외주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』에 따라 일정기준의 승인 및 평가절차를 거쳐 승인 획득 및 유지된 회사로서 협력회사 등록명부에 기재된 회사, 즉 협력업체 AVL(Approved Vendor List)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.
- (2) " 협력업체 AVL"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/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- (3) " 협력업체 선정 " 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AVL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(4)"협력업체 운용 " 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/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AVL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## 3. 협력업체 선정/운용 실천사항

### (1)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AVL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,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제정한 『협력 업체 관리 프로세스』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

## (2)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
- 1)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(1회/年 정기시스템 Audit) 개시 30일 이전에 전자매체(당사 웹사이트)등에 15일 이상 공개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한다.
- 2)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개별 통지한다.
- 3)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개별 통지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.
- 4)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,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.
- 5)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## (3) 신규 거래 등록 기준 및 절차

- 1)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.

『외주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』에 따라 외주 필요 발생 시 발의, 승인(제품/업체/PPAP),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 업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.

### 2) 용어 및 정의

- ① 발의 : 외주 신규 필요 발생시 이를 규정된 승인 절차에 따라서 유관부서의 합의를 진행하는 승인 요청 행위
- ② 승인 : 당사의 외주 기준을 만족하여 거래 가능 업체로 등록하는 행위
- ③ 평가 : 당사와 거래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 단계인 외주업체에 대해서 규정된 평가 양식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행위

### 3) 발의 기준

- ① 내부 공정의 생산 CAPA 부족으로 증설이 불가피할 시
- ② 내부 공정에 없는 신규 공정 필요 시
- ③ 내부 공정의 품질 불안정으로 안정된 품질 확보 필요 시
- ④ 제품 개발, 사양관리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,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 수주 제품이 발생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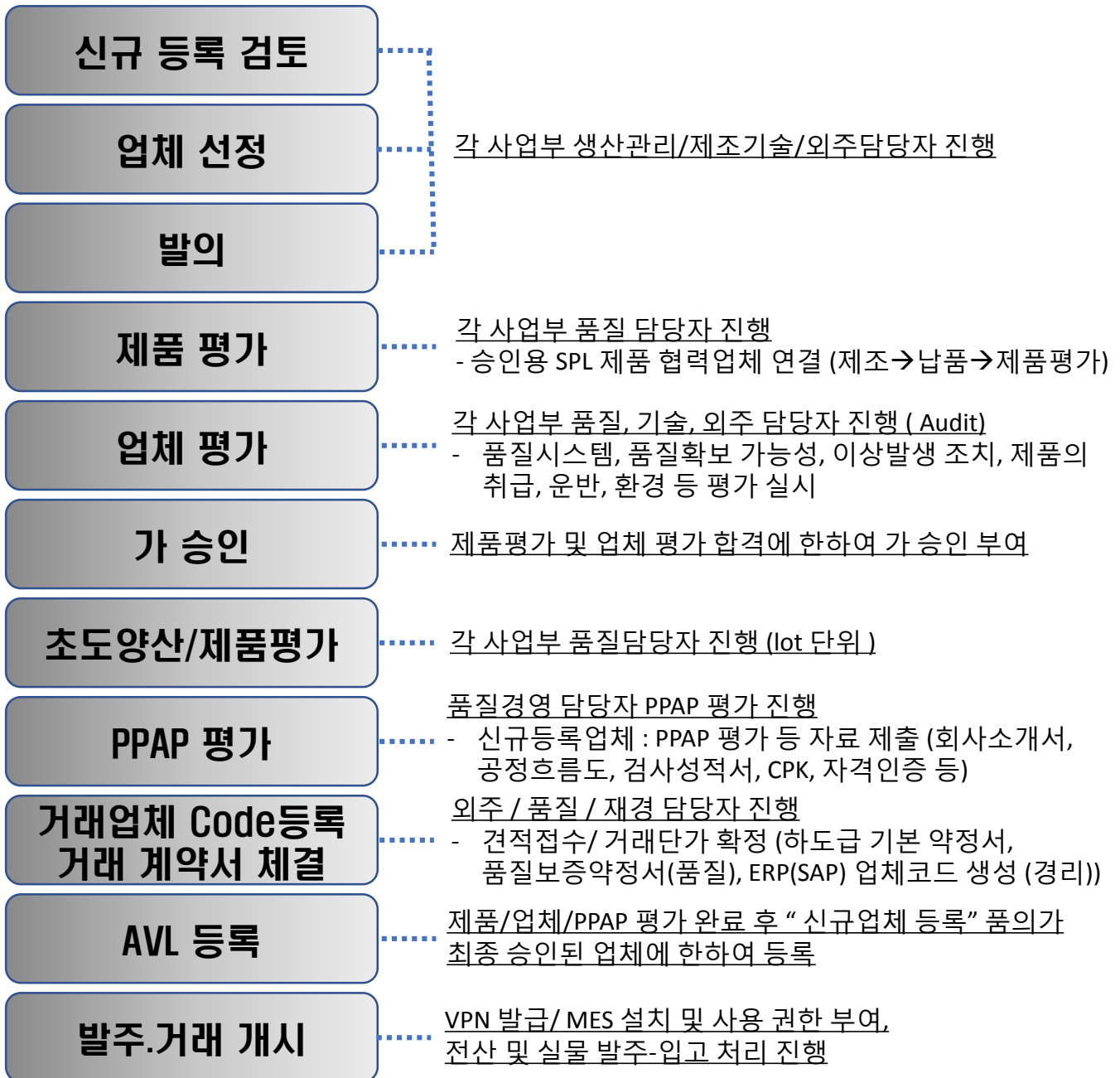
#### 4) 승인의 구분

- ① 제품 승인 : 승인 요구품목의 품질 평가 결과 당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
- ② 업체 승인 : 경영현황 및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 당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
- ③ PPAP(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) 승인 : 제품 및 업체 승인 완료 후 초도 양산평가 결과와 PPAP 제출자료가 당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(최종승인에 해당)

5)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.

#### 6) 신규거래 등록절차

- ① 업체선정 및 발의 → ② 승인계획 수립 → ③ 제품 승인 → ④ 업체 승인 →
- ⑤ PPAP 승인 → ⑥ 승인결과 협력업체 통지 → ⑦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



① 업체선정 및 발의

발의 기준에 따라 제조부서 및 관련부서(생산관리,기술,개발,품질 등), 외주부서에서 선정과 발의할 수 있음, 발의 시 업체선정이 되어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,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업체를 SOURCING 하여 이를 검토한다. 검토결과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품질부서에 평가 의뢰한다.

② 승인계획 수립

업체승인을 의뢰 받은 품질부서는 업체실사 계획, 제품평가 계획등 승인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평가 대상업체에 공유한다.

③ 제품승인

가) 승인계획에 따라 제품승인 시 필요한 SAMPLE을 준비하여 평가 대상업체에 연결한다.

나) 제품이 완성되면 품질 CHECK 항목을 결정하여 품질평가를 진행한다.

다) 품질 평가 결과 NG 사항이 발생 된 경우 NG 사항이 중대하지 않을경우에는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, 3개월 이내에 재 승인절차를 받을 수 있다.

라) 품질 평가에 중대한 사항이 NG인 경우에는 품질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 하고 승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

④ 업체 승인

가) 업체 승인 시 업체실사를 진행한다.

나) 품질시스템의 구축상태, 당사 제품의 생산 시 품질의 확보 가능성, 이상 발생 시의 조치, 품지보증 체계, 제품의 취급 및 운반 등 품질에 관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체크 SHEET를 이용하여 평가한다.

다) 실사에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한다.

⑤ PPAP (P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)

가) 업체 및 제품 승인 후 평가 대상업체로 부터 PPAP 자료를 접수한다.

※ PPAP 자료 : 회사소개서, 공정흐름도, 공정FMEA, 출하성적서, Cpk, 자격 인증 현황 등 (사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)

나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승인한다.

⑥ 승인결과 협력업체 통지

모든 평가 및 승인절차가 완료된 업체에 협력업체 최종승인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범위와 승인내용 등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,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. 또한,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※ 승인 여부의 판정

가) 가승인 : 제품평가 결과 minor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, 업체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PPAP 평가의 대상이 된다.

나) 승인 : PPAP 평가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한다.

다) 승인불가 : 제품평가 결과 MAJOR 결함이 발견되거나, 업체 실사 결과 69점 이하

⑧ 업체등록 및 계약 체결

최종 승인된 업체를 AVL (Approved Vendor List)에 업체 등록을 하여 “하도급 기본 약정서 ” 를 체결한다.

7)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

협력업체로 선정.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등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.

## 4. 협력업체 운용 기준

(1) 등록(승인/거래) 유지

- 1) 업체 승인의 유지를 위해 거래업체에 대한 품질시스템 AUDIT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.
- 2) 정기 AUDIT 진행시, 실시 30일 전에 대상 업체에 평가 일정을 공유하며 협력사 정기 평가 SHEET를 발송하여 사전에 자가 진단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.
- 3) 업체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체 실사결과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.
- 4) 승인이 유지된 업체에 한해서 매년 1회 ‘하도급 기본 약정서’를 갱신 체결한다.

(2) 등록취소 기준

- 1)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.
  -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 - ②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된 경우

2)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.

- ①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②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거래업체의 기술,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④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⑤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
3)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자매체 (당사 웹사이트) 등에 공개한다.

4)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 취소(중단)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.

- ① 원가절감 계획, 납품 단가인하 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-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-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( 단,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 취소 가능)
-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
5)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.

(3)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.